


서울의 핸드메이드 창의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사단법인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에 필요한 핸드메이드 창의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상호 기관간의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울의 핸드메이드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업무)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한다.

1. 핸드메이드 일상 창작 문화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의 대표브랜드로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의 공동주최
2. 핸드메이드 문화의 확산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교육과 연구사업
3. 핸드메이드 창작자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홍보하고 판로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전시와 판매 사업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정기적인 시민시장의 개최 사업
4. 핸드메이드의 국제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사업
5. 핸드메이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사업
6. 동대문권역의 창의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공동 도모
7. 기타 지속 가능한 서울의 핸드메이드 문화와 창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3조 (역할분담)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 상기 협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한다.

1. 양 기관은 협력 업무에 필요한 협치 구조를 만들어 소통 및 토론하여 함께 결정한다.
2. 서울디자인재단은 협력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제공, 행정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진행한다.
3. 일상예술창작센터는 협력업무의 기획과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한다.
4. 기타 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할 분담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4조 (협의 및 비밀의 준수)

'제2조'에 따른 협력업무와 관련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정보를 본 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및 유지)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상호간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할수 있다.

제7조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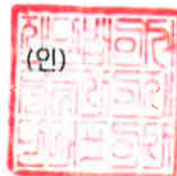
본 업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4월 21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사단법인 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이사 이 근



대표 김영등

